

著作權 開放과

소프트웨어產業의 未來

Development of Copyright
and the Future of Software
Industry

趙 廷 完

金星소프트웨어(주) 社長

1. 序 言

작년 12월 開催된 韓美通商協商에서 美國側이 通商法 301條를 내세워 韓國의 保險市場 開放 및 知的所有權 保護를 강력히 요청해 온에 따라 當局에서는 原則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후 연쇄적인 實務 接觸을 통해 開放의 범위와 知的所有權保護 方案등을 마련하고 지난 6월23일의 제 5차 韓美經濟協議會에서 物質特許·著作權, 商標權등 知的所有權保護 問題를 집중 討議 함으로써 마침내 7월 21일 知的所有權保護의 方法과 實施時期를 包含한 韓美間의 貿易懸案들에 대해 一括 合意를 보게 되었다.

이 合意內容中 소프트웨어의 知的所有權保護 部分을 보면 韓國政府는 소프트웨어의 著作權 保護를 위한 別途法을 制定하여 금년 定期國會에 上程·通過 시킴으로써 1987年 下半年부터 施行하기로 되어 있다.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產業의 一大 轉換期가 될 이 시점에서 소프트웨어市場의 開放을 決定하게 된 背景과 지금까지 進行되어온 開放 準備狀況을 科學技術處에서 마련한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案)」을 中心으로 살펴본 후 소프트웨어의 知的所有權保護에 따른 未來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產業의 變化를 豫測해 봄으로써 知的所有權保護를 통한 國內 소프트웨어市場의 開放이 향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產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자 한다.

2. 市場開放의 背景

1980年代에 들어서면서 美國을 포함한 주요선진국들은 점점 높아지는 세계 各國의 保護貿易主義를 탈피하기 위하여 GATT를 중심으로 새로운 多者間 貿易協商을 模索하게 되었으며 1982年의 GATT 總會에서는 서비스교역 自由化를 하나의 課題로 採擇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美國은 製造業部門에서 점차 比較優位를 喪失해감에 따라 그들이 優位를 確保하고 있는 尖端技術產業과 서비스產業의 貿易障礙 요인을 除去하기 위해 開發途上國들과의 雙務協商時마다 이 部門의 開放을 주장해 왔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金融·保險등의 서비스產業과 컴퓨터 하드웨어市場의

開放을 要求하는 한편 최근에 와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人間の 知的活動結果로 생겨나는 無形의 產物로서 그 著作權 또는 知的所有權의 保護마저도 要求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독립적인 하나의 產業으로 조차 分類되지 못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保護問題를 거론하게 된 것은 知的所有權問題 자체보다 하드웨어市場의 完全開放을 目標로 하는 美國의 政策基調에 그 직접적인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우리나라의 立場에서는 美國의 要求를 가능한 한 적은 범위내에서 受諾함으로써 점점 심해지는 多方面의 市場開放壓力에 대한 緩和의 方便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開放準備狀況

美國에서는 모든 技術의 應用方法, 特定分野에 대해 蓄積된 情報등을 모두 포함하여 상당히 廣範圍한 소프트웨어를 保護의 對象으로 하고 기존의 著作權法에 포함시켜 保護해 주도록 要求하였으나 科學技術處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름대로 소프트웨어의 著作權의 權利保護法 마련을 위하여 情報產業協會, 소프트웨어 開發研究組合등 國內 情報產業有關機關과 大學 및 研究所등을 통하여 業界와 學界의 廣範圍한 意見을 취합해 왔으며 이 意見에 따라 保護의 對象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국한 시키는 한편 著作權法에 포함 시키지 않고 別途法制定을 통하여 保護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지난 4월 15일 全經聯會館에서 業界·學界·法界등 各界人士가 참석한 가운데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案)」에 대한 公聽會를 開催함으로써 保護法(案)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今年 定期國會에 이 法을 上程, 通過시키기 위하여 그간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 最終 마무리 作業을 착실히 進行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4월의 公聽會에 참석하였던 大部分의 사람들은 소프트웨어의 法的 保護 必要性에 대해 原則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도 그 實施時期와 方法論에 있어서 保護法이 포함하지 못하는 實質的인 문제점들의 解決方案이 다각적인 경우에 對備하여 마련되어야 한다는 意見을 제시하였으며 필자 또한 이에 동감하는 바이다. 아울러 現在 마련되어 있는 保護

法(案)은 各界의 意見을 두루 反映하여 法自體의 施行에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公聽會 참석 人事들이 지적했듯이 法 施行過程에서 마찰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줄 仲裁기구의 設立와 仲裁方案의 마련 또는 소프트웨어의 積정가격 산정기준등 制度的 보완장치를 철저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소프트웨어產業의 未來

지금까지 마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案)」이 國會에 上程되어 통과되면 外國人에 의해 製作된 소프트웨어도 內國人的 그것과 동등하게 保護해 주어야 하고 이는 實質的으로 國內 소프트웨어市場의 對外開放을 의미하므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產業은 어떠한 形態로든 상당한 整理期를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는 하드웨어 생산업체들도 모두 소프트웨어 用役業체로 등록되어 있어 혼선을 빚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專門業체 중심으로 교동정리가 이루어져 國內 소프트웨어 產業의 획기적인 發展이 예상된다.

혹자는 市場開放에 따라 國內 소프트웨어 產業이 심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지 모르나 이 法이 制定되기 이전에도 技術導人先과의 계약에 의해 이미 오퍼레이팅시스템이나 고급 유틸리티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소프트웨어 分野와 CAD/CAM 등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分野에서는 正當한 代價를 支拂해온 것이 事實이고 一部 事務自動化 소프트웨어 分野에서 無斷復製是非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 分野에서의 代價支拂에 따른 추가부담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이 法 制定으로 인해 無斷復製王國의 불명예를 벗어버리고 그간 소프트웨어의 質的인 면은 고려하지 않고 無分別하게 導入하여 復製하던 것을 代價를 支拂하는 만큼 양질의 소프트웨어가 選別導人되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正식으로 사용자지침서는 물론 아퍼터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되어 고객서비스 側面에서도 改善되는 점이 많을 것이다.

또한 이 法의 制定은 우리 소프트웨어의 輸出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技術的인 면에서 國內 소프트웨어 產業의 基盤이 아직은 취약하므로 당분간은 國內 業체가 海外 우수 소프트웨어 業체의 代理店役割을 맡을 수밖에 없겠지만 時間

이 지나면서 신뢰가 쌓이고 정당한 代價支拂을 技術移轉의 촉진제로 活用하여 우리의 技術이 蓄積되면 外國業體와 소프트웨어의 共同開發뿐 아니라 적극적인 輸出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프트웨어 開發者의 權益保護를 소홀히 하여 開發에 대한 投資意慾이 부진하고 기술증진의 속도도 미약하였으나 開發者의 權益이 充分히 보장된다면 投資意慾도 왕성해지고 따라서 기술증진의 속도도 급격히 상승 할 것이다. 最近 國內의 여러 大企業들이 소프트웨어 專門業體를 設立하는등 소프트웨어 産業에 적극 投資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이 法의 制定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産業에 획기적인 變化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專門流通業者가 등장 하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결여되어 있던 소프트웨어의 商品性이 이 法 施行을 계기로 널리 인식된다면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훌륭한 商品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法的 保護가 長期的 眼目으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産業이 發展을 촉진하는 役割을 하겠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의 施行초기에는 일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리라 생각한다.

첫번째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國內 소프트웨어 産業의 一時的인 위축이다. 왜냐하면 海外的 實力있는 소프트웨어 大企業들이 앞다투어 國內市場에 進出할 것이고 이들의 市場占有에 따른 國內 소프트웨어 業體들의 事業領域이 축소되는 한편 소프트웨어의 價格上昇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로 --時的인 수요감퇴현상이 發生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施行初期段階에서의 유통질서문란을 예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컴퓨터 사용자들의 大部分이 소프트웨어의 商品性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 즉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한 部品 또는 관측물 정도로나 인식하고 있던 이용자들에게 갑작스런 소프트웨어 開發者의 權利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음으로써 양자간의 마찰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첫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政府當局이 강력한 소

프웨어 수요증진정책을 實施하는 政策的 배려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 동안 추진해오던 行政電算網을 비롯하여 國家基幹電算網구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대규모 수요를 創出하는 한편 政府機關에서 하드웨어를 구매할 때 일정 수준이상의 國產化를 條件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公共事業에 外國業體의 참여를 選別的으로 허용함으로써 國內業體를 어느 정도 保護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政府와 業界가 共同으로 꾸준한 홍보와 계몽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時間이 흐르면서 점차 改善될 것이다.

한편 개방화시대를 맞이하는 業界도 나름대로 빠른 시일내에 對外 경쟁력 向上을 위해 적극적으로 對策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것저것 種類를 가리지 않고 여러가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開發하던 타성에서 벗어나 技術優位를 確保하고 있는 한 두가지 專門 소프트웨어에 開發력을 集中하고 代表的인 企劃商品의 開發과 販賣에도 주력해야 하는 한편 21세기 國家經濟의 向方이 소프트웨어 産業의 成敗에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현재의 단순한 데이터入力이나 코딩단계를 뛰어넘어 本格的인 소프트웨어 輸出時代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과감한 研究費投資와 技術人力에 대한 教育投資로 先進技術 함양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와 같이 부존자원이 不足하여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기술집약적인 産業을 集中 育成하여 야만 未來의 先進國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첨단기술 산업의 하나인 소프트웨어 産業을 各界의 힘을 합쳐 고도로 發展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知的所有權保護法 制定을 승환한 이번 韓美貿易協商이 비록 동상법 301조를 내세운 美國側의 壓力에서 비롯되었지만 狀況은 活用하기 나름인 것이다. 좋은 條件도 活用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나쁜 條件도 活用하기에 따라서 전 회위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듯이 이번에 우리 소프트웨어 産業에 주어진 일련의 狀況을 政府와 業界 學界 모두가 합심해서 슬기롭게 극복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 國內 소프트웨어 産業 제 2의 도약기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